

---

# 개방형직위(개발지원협력과장) 안내자료

---

2022. 1.



# I 통일부 일반현황

## 1. 임무

### □ 정부조직법 제31조(통일부)

- “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·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, 통일교육,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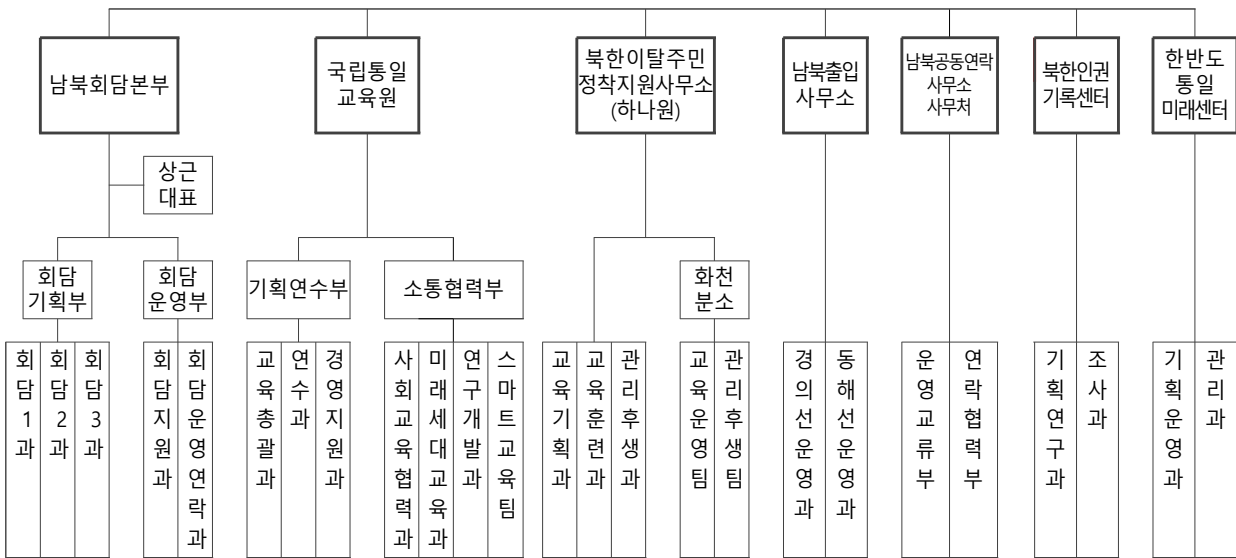
- (통일정책) 「담대한 구상」 등 대북정책 총괄·조정 및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·집행
- (남북회담)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·군사 등 분야의 남북회담을 총괄
- (남북교류협력)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등 남북 경제협력, 사회문화교류, 그린데탕트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여건 조성 노력
- (인도적 문제 해결) 대북 인도협력, 북한인권 개선, 이산가족, 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
- (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) 북한이탈주민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, 사회진출 후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원
- (북한정보 수집·분석) 통일정책 수립·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·군사, 사회·문화, 경제·과학 분야 등에 관한 정보 분석
- (통일교육) 효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·보급 등
- (평화·통일 공감대 확산)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및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법·제도 기반 구축 등

## 2. 조직 및 정원('22.12.29자 직제개편 예정)

○ 본부 : 3실 2국 3관 2단 30과·담당관 6팀



○ 소속기관 : 7소속기관 4부 22과(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2부 포함) 3팀



□ 산하 공공기관 (기타 공공기관)

○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

4. 예산 및 기금(안)

(단위 : 억원)

년도	예산(일반회계)	남북협력기금
2022	2,309	12,690
2023	2,187	12,310

5. 소관 법률

□ 법 률 : 11건
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'90.8.1 발효)
- 남북협력기금법('90.10.1 발효)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'97.7.14 발효)
- 통일교육 지원법('99.8.6 발효)

-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('06.6.30 발효)
-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('07.4.27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('07.8.26 발효)
-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07.10.28 발효)
-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'09.9.26 발효)
-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('10.9.27 발효)
- 북한인권법('16.9.4 발효)

□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 합의서 : 13건

-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('03.8.20 발효)
-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('03.8.20 발효)
-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('03.8.20 발효)
-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('03.8.20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('05.8.1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('05.8.1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('05.8.1 발효)
-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('05.8.1 발효)
-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5.8.1 발효)
-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5.8.1 발효)
-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('05.8.1 발효)
- 남북해운합의서('05.8.1 발효)
-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('05.8.1 발효)

## Ⅱ 개발지원협력과장 주요업무내용

### 1. 일반 현황

#### □ 조직 및 정원

- 개발지원협력과

구분	3~4급	4급	4~5급	5급	6·7급	8·9급	계
정원	-	1	1	2	1	1	6

#### □ 예산

사업명	2023년
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	1,010백만원
-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	300백만원

### 2. 주요 내용

-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
-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
-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
-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사후 관리
- 민간단체·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·조정·승인 및 지원
-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·왕래에 대한 기획·조정·승인 및 지원
-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·반입 승인
-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
-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·행정 조사 및 조정명령
-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

### Ⅲ 개발지원협력과 당면현안과제

#### □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

-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(신규 예산 3억원)
  - 분야별·단계별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세부계획 수립(연구용역 추진)
  - 남북 그린데탕트 통합 소통채널 구축, 분야를 아우르는 소통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
    - \* 관계부처·기관·국제기구·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상시 협의체 운영, 필요시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
  - 국제행사 참석, 국제포럼 개최, 대국민 홍보 등 추진 기반 마련
    - \* 청년층 대상 포럼, 전문가 세미나·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

#### □ 산림·농업·환경 등 개발지원협력 관계기관과의 상시·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

- 남북관계 재개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
  - 북한 민생개선 사업 관련 분야별(산림·농업·수자원 등) 지원방안 구체화
- 계기시 ‘담대한 구상’과 연계하여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협의 추진 준비

#### □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국내외 동향 파악

-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 대두
  - 최근 북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표시 중
    - \* △UN자발적국가보고서(VNR) 제출('21년) △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(COP27) 참석('22년) 등
- 국제기구·INGO, 민간단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북측 동향 상시 파악
  - '23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(COP28) 참석을 통해 북측 대표단 접촉 추진

㉔